

제주 기반 관광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2024 도전! J-스타트업’ 참가자 모집 공고

우리 공사에서는 최근 관광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주 기반 혁신 관광스타트업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4 도전! J-스타트업』 참가사를 모집 하오니 창업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 3.

제주관광공사 사장

1 모집개요

- 공모명 : 『2024 도전! J-스타트업』 참가자 모집
- 공고기간 : 2024. 3. 27.(수) ~ 4. 30.(화), 35일간
 - * 신청기간 : 2024. 4. 22.(월) 9시 ~ 4. 30.(화) 14시까지
- 신청자격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중소기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
 - ※ 2017. 3. 27. ~ 2024. 3. 27. 기간 내 창업기업
- 선정 : 5개사 내외
- 지원사항 : 사업화자금(상금, 총 7천만원), 비즈니스 컨설팅
J-스타트업 지정, 비즈니스 성장 후속지원
- 모집주제 : 제주 기반 혁신적인 관광비즈니스 * 세부내용 참고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각종 증빙서류 등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주요일정 : 1차 심사(참여기업 선발, 서류/발표 심사) : 4 ~ 5월
비즈니스 빌드업(엑셀러레이팅) : 6 ~ 9월
2차 심사(참여기업 대상 데모데이) : 9 ~ 10월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제주 기반 관광비즈니스’를 영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고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에 해당되며,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창업 후 7년 이내(2017 3. 27. 이후 창업) 창업기업(중소기업 법인, 개인사업자)

* 【참고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에 따라 정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법인 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즈니스 빌드업 기간(6월~9월) 이내 법인 사업자로 전환해야 함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함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에서 지정한 적용제외 업종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썬블링 및 베텩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함

< 신청제외 대상 >

○ 금융기관에 의해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재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예외

○ 공고일 기준(2024. 3. 27)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전년도 사업 포기 기업

○ 국가기관, 지자체 및 산하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기업(창업지원기관 대상 중복성 검사 시행, 7페이지의 8.유의사항 참고)

3 모집주제

제주 기반 혁신적인 관광비즈니스

- ◆ **비즈니스 대상은 제주 방문 국내·외 관광객**
- ◆ 최신 관광트렌드를 반영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제주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혁신 관광비즈니스
- ◆ 제주 로컬자원(1차 자원, 자연/역사/문화 등) 활용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혁신관광 비즈니스
- ◆ 새로운 혁신기술의 접목을 통해 현 제주관광의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제주 방문 관광객의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는 관광비즈니스

< 신청제외 사업 및 유의사항 >

- 기존 도내에 출시되어 판매 중인 유사 서비스 및 단순 체험프로그램 제외
- 일반적인 여행사 관광상품 제외
- ICT 기반일 경우 제주를 포함하는 서비스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정보제공 기능 등 단순 서비스는 제외
- 체험형 사업일 경우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증 취득이 완료되어야 함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에서 지정한 적용제외 업종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갬블럼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 창업기업이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인 경우 비즈니스 확장 및 새롭게 사업을 리뉴얼할 경우만 해당 지원사업 지원 가능
 - * 단순한 비즈니스 규모 확장은 제외될 수 있음
- 타 기관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창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을 받았을 경우, 해당 『도전! J-스타트업』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성과 및 차별성을 사업계획서 상 명확히 기술
 - 단, 내부 심사기준에 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4 사업화자금(상금) 및 지원사항

구분	지원내용	비고
비즈니스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관광 기반 비즈니스 고도화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 및 비즈니스모델 등 컨설팅 - IR 자료 제작 및 IR코칭, 스피치 코칭 등 	1차 심사 통과기업
사업화 자금 (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스타트업 사업화 자금(상금)수여 : 총 상금 7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모데이 심사결과에 따라 수여 - 5개사 내외 사업화 자금(상금) 수여 1위 최대 4,000만원 ※ 상금형 사업화 자금 지원으로 인건비 30% 이하 사용 가능, 자금 사용 계획 및 사용결과 제출 	2차 최종심사 선정기업
J-스타트업 지정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관광 J-스타트업 지정 및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일로부터 3년간 유지(지정서 및 협약서 발급) ☞ 비즈니스 마케팅 바우처 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년도 1회 지원, 비즈니스 런칭 시 지원 가능 ☞ 온·오프라인 마케팅(SNS홍보, 광고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지원, 비즈니스가 운영되어야만 지원 가능 ☞ 제주관광공사 마케팅 연계 홍보 등 	

5 추진절차



* 세부 추진일정은 사업추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참가자 선정) 서류검증,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5개사 내외 참가자 선정
- (비즈니스 빌드업) 1차 심사 통과 기업 대상 역량 진단, 제주 기반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 컨설팅(BM정립, 시장검증/브랜딩 등), IR 코칭 등
- * 실제 제주 기반으로 성과 창출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단계
- (비즈니스 데모데이) 비즈니스 전략 및 세부계획 발표, 성과 창출 가능성, 제주관광 긍정적 파급효과 등 심사, 우수기업 선정
- (협약체결) 관광공사-선정기업간 협약체결, 사업화자금(상금) 및 지정서 수여

6 신청 · 접수

가. 신청기간 : 2024. 4. 22.(월) ~ 4. 30.(화) 14시까지

* 공고기간 : 24. 3. 27(수) ~ 4. 30.(화), 35일간

나.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제출처 : jstartup24@ijto.or.kr**)

★ 접수 완료 시 ‘완료알림’ 메일 전송됨

다. 제출서류

< 필수서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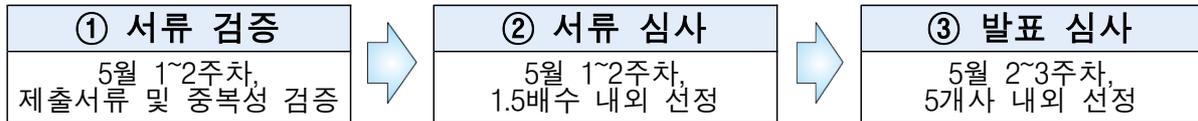
- 참가신청서 1부 (서식1)
-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서식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 법인-기업명의, 개인사업자-개인명의
-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내 여권 중 1개)
- 대표 역량 증빙서류 :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부
 - *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 경력증명의 경우 사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고용실적증빙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 참가신청서 상 참여인력 구성에 재직으로 작성한 모든 인력 포함
- 매출실적증빙서류(22년~23년) : 연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 선택서류 >

- 팀보유 역량 증빙서류 :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 * 선택사항, 사업 비즈니스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시, 되도록 참여인력 구성 현황(서식 1. 참가신청서 內)과 일치하게 제출
- 기타 특허, 인증, 계약실적 등

7 참가자 선정심사

가. 1차 참가기업 선정심사 * 전문가 심사위원단 구성하여 심사



① 서류 검증

- 제출서류 확인 및 미비서류 요청
- 유사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지원 여부 검증

② 서류 심사

- 신청자격, 모집주제 반영 및 관련 제외사항 심사
- 사업화 전략, 시장 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팀 보유 역량 심사

③ 발표 심사

- PT 발표 및 질의응답
- 사업화 전략, 시장 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팀 보유 역량 심사

나. 2차 최종 선정심사 * 전문가 심사위원단 구성하여 심사

- 비즈니스 데모데이(PT 발표 및 질의응답)를 통해 성과 창출 가능성, 제주관광 긍정적 파급효과 등 심사, 우수기업 선정

8 유의사항

가. 신청 시 유의사항

○ 공모 참가시 유의사항

- 기존 도내에 출시되어 판매 중인 유사 서비스 및 단순 체험프로그램 제외
- 여행사 관광상품 제외
- ICT 기반일 경우 제주를 포함하는 서비스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정보제공 기능 등 단순 서비스는 제외
- 체험형 사업일 경우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증 취득이 완료되어야 함

- 타 기관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창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을 받았을 경우, 『도전! J-스타트업』을 통해 도출해 낼 수 있는 차별화 및 성과를 사업계획서 상 명확히 기술

단, 내부 심사기준에 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나. 평가 중 유의사항

- 발표 평가 시 창업기업의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함
- 서류·발표 평가에서 평가항목별 배점이 항목별 전체 배점의 60% 미만일 경우 종합점수와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

다. 선정 후 유의사항

- 본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사업화자금(상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9 선정자의 의무

- 선정기업은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제주관광공사가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체결 이후 1년간 창업기업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선정기업은 협약체결 이후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0 문 의 처

○ 제주관광공사 064-740-6941

【참고 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기창업자 해당)

○ 창업여부 기준

주 체	사업장소	사		레	창업여부
A개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개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법인전환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가 (개인)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가 (개인)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가

참고)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2.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
(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을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3. “A명”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 창업업력 기준

- 업력 7년 초과한 사업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기준일자 이전 타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새롭게 창업하는 업종의 업력을 적용

Q, 2010년에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운영 중이던 홍길동씨는 『도전! J-스타트업』 모집 공고일 이전에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8년 신규 법인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 대상자 모집공고에 신청이 가능한가?

A. 가능

(창업여부) '21. 3. 29. 이전 이종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창업으로 인정
(창업업력) 정보서비스업의 업력 4년을 기준으로 판단